

DDP 행사이용안내 매뉴얼

구분	내용	비고	확인
서류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서류는 행사 일주일전까지 제출(긴급상황 시 필히 협의하여야 하며 최소 3일(주말 및 공휴일제외)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은 09:00 ~ 16:00(평일)까지 제출하여야 함) - 행사계획서, 신고서, 각종 면허증, 보험, 필증 및 구조계산서 등 행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본하여 3부 제출 - 핸드북 제작하여 스케줄 및 비상연락망, 분야별 담당자 등등 행사에 필요한 내용 요약하여 제출 - 설치 및 철거 등 작업 전날 09:00 ~ 16:00까지 지하2층 종합상황실에서 작업일일보고서 필히 작성(작업 당일 작성 할 수 없으며 전날 필히 작성해야함) 		
행사장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 전 주최자 또는 대행사는 행사장을 확인하여 기록을 하여야 함 (사진, 동영상 등) - 행사 후 시설하자 발생 시 행사측에서 사전 기록한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하여 하자 검수 		
하역장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역장은 자재 및 음향, 영상 렉 등을 적재 할 수 없음 - 자재물은 차량에서 하역 후 바로 행사장으로 진입 - 차량은 주차 및 상주 할 수 없음 하역 후 바로 차량반출 - 하역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음 - 하역장에 폐기물 및 쓰레기 적재할 수 없음 - 하역장 입차는 각 행사장별 담당구역에서 입차 가능 - 하역장 높이는 3.7m이므로 그 높이 이하의 차량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 높이 이상의 차량이 진입 할 수 없으며 3.7m이상의 차량으로 가져와 주차장 앞에서 소형차량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할 수 없음 - 하역장진입 차량의 번호를 작업신고서에 기입하지 못하였으면 행사 측 직원이 주차장앞에서 상주하여 차량 확인 후 진입 허가 		
바닥보양 (기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회의장 및 준비실은 다과 및 식사가 있을 경우 바닥 전체 보양(파인텍스, 합판, 카펫 중 택) - 금속 및 무게를 받는 지지대 밑은 보양해야함 - 자재반입 시 바닥 비상유도등을 피하여 이동동선 확보하 		

	<p>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알림관 바닥 전기 패치의 나사는 수동으로 작업하며 패치 라인이 나올 수 있는 원형 나사는 패치안에 보관해야 함 - 케이터링 사용 시 기본 테이블 및 보양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 범위를 협의해야함 		
바닥보양 (중량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차량(승용차), 3ton(총무게) 이하의 소형 리프트카, 중량물 등의 진입 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하고 임의로 진입 할 수 없음 - 보양은 합판10T 이상으로 함(고정하중 초과는 바닥구조 계산서 제출) - 5ton 이상의 차량 및 중량물은 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진입 할 수 없음 - 바닥구조계산서 필히 첨부하여야하며 보양은 하중에 따라 합판 또는 철판보양 		
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장 내 가연물, 인화물 반입 할 수 없음 - 전기간선작업은 필히 시공면허증이 있는 업체를 사용하며 작업현장기사는 전기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함 - 작업 시 전기사용은 간선작업을 한 후 사용 가능 - 협의 되지않은 전기(벽전기, 화장실전기 등)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- 전기, 음향, 영상 등 라인이 나오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라인을 보양하여 통행 및 작업의 안전을 준수하여야함 - 용접, 글라인더, 페인트, 전기톱, 및 화염작업, 톱밥이 날리는 작업 할 수 없음(목재 조립 후 부분 소량 페인트작업은 바닥 보양 후 진행, 목재 조립 후 부분 톱질 작업은 한곳에서 흡진기 및 소화기 필히 배치하고 작업하며 2인 1조 작업 진행) - 위의 조립 마무리 시 소량의 페인트 및 톱질작업은 필히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, 협의하지 않을 경우 중지함 - 벽부에서 1.5m 필히 공간 확보(비상통로이므로 좁힐 수 없음) - 소화전, 비상구 앞 필히 개방하여야함(가림막 설치 할 수 없음) -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 비상통로 확보 및 소화전, 비상구 앞 개방함 - 부스처럼 행사장 내부에 미로형태의 공간이 생기면 비상통로 표시 및 비상 안내도 배치하여야 함 - 알림관에서는 에어샷, 건, 화염특효는 사용 할 수 없으며 		

	<p>드라이아이스 및 이산화탄소는 사전 협의 및 사용 전 종합상황실에 연락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 행사장 이용 시 설치, 철거 작업 전 차단봉 또는 팬스로 작업공간 확보 후 공간안에서만 작업 및 적재하여 진행하여야 함(라바콘 사용 불가) - 현장 상황에 맞춰 DDP근무자가 작업의 위험이나 보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시 작업자는 DDP근무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여야함 - 철거 시 행사장 내부로 협의 없이 지게차 및 폐자재 수거차량이 들어 올 수 없음 		
작업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소 작업 시 안전모 착용하여야함 - 작업복은 현장책임자(빨강)은 착용 - 복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고, 1회 경고 후 30분내로 재확인하여 복장 미비 시 작업 일시 중지 후 현장책임자의 안전교육 후 작업 개시 		
작업자 식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장내부 및 하역장에서는 식사를 금하며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하여야 함(평일의 경우 살림터3층 직원 식당을 사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음) - 행사장 내부 및 하역장에서 햄버거, 피자 등 냄새 및 오염이 될 수 있는 음식을 간식으로 이용 할 수 없음 - 음료 및 커피의 경우 행사 장소에 따라 제약이 있으므로 DDP현장 관리자의 요청에 응해야함 		
로비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로비의 절반이하로 사용하여야 함(알림관의 경우 행사장 쪽으로 2.4m허용) - DDP로비는 일반인 및 DDP투어동선이므로 행사측에서 진입을 막거나 통제 할 수 없음 - 로비 사용 시 DDP 사인물, 미디어폴을 가릴 수 없음 - 로비내에서 작업 할 수 없고 행사장 내부에서 작업 완료 후 이동하여 설치 가능(철거 시 행사장내부로 이동하여 해체) - 로비의 전기는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(3kw미만) - 금속 및 무게를 받는 부분은 보양하여야 함 - 전선 및 설치물 보양이 디자인건물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경우 행사측은 보양 디자인에 변경을 하여야함 		
티배너 자배너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티배너는 한 행사당 최대 4개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위치에 사용해야 함(자체 제작 및 사용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배너는 사용 할 수 없음) 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티배너는 외부, 7자배너는 내부에서 사용하며 그 외 배너 및 홍보물을 사용 할 수 없다) 		
외보 홍보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 전단지 및 광고물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외부 현수막 등 광고성 물품은 마케팅팀에 협의하여야함 		
청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자재 및 일반 쓰레기들은 바로 처리를 원칙으로하나 행사장 창고, 하역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임시보관 가능함 - 설치 시 폐자재 및 일반쓰레기를 처리하였어도 장기간 행사(1주일이상)일 경우 행사장 내부에서 쓰레기 보관 한도를 넘었을 경우 즉시 쓰레기 반출해야 함 - 행사장 내부 및 행사에 의해 사용한 공간은 행사측에서 청소해야함 - 알림1,2관 및 로비, 하역장은 일반쓰레기 철거 및 먼지제거, 식음료의 경우 왁싱청소해야 함 - 카펫이 설치된 공간은 일반 청소 및 식음료의 경우 스팀 청소하여야 함 - 국제회의장, 준비실은 물청소를 할 수 없고 부분 약품청소 또는 왁싱청소하여야 함 		
주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DP 내, 외부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음(단, 행사에 관련한 кей터링일 경우에 한하여 협의 후 판단) - 행사 진행자는 본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 안전 및 금지사항을 어기지 않도록 함 		
퇴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DP내부(야외 포함)에서 흡연 적발 시 이유를 막론하고 퇴출 조치 - 흡연자는 퇴출 조치하며 작업 일시 중지하고 흡연교육 실시 후 작업 재개 - 행사관계자 및 작업자는 DDP근무자에게 폭언, 폭행을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형사조치 또는 퇴출하도록 함 - 작업규정을 위반한 작업자가 경고2회 후 조치되지 않을 경우 퇴출하도록 함(경고는 30분마다 확인) 		